

제24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.

2015. 2. 3.

임실군의회 의장

## 1. 개정이유

- 가.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농업과 임업 피해 농가에만 피해보상금을 지원하던 것을 그 대상을 확대하여 어업 피해 자에게도 보상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,
- 나. 피해 농가보상금 지원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소요에 따른 보상방식 개선으로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신설 (안 제2조)
  - “농작물”, “산림작물”,을 “농작물”, “산림작물”, “수산양식물”으로
  - “농업인”, “임업인”,을 “농업인”, “임업인”, “어업인”으로
- 나. 보험가입 신설 (안 제10조)
- 다. 다른 법률 준용 신설 (안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
  -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,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
- 나. 예산조치 : 예산담당 협의
- 다. 협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2) 입법예고(2014. 10. 24. ~ 2014. 11. 13.)결과 : 의견 없음
- 3) 규제심사 : 비규제(기획감사실-12412)
- 4) 비용추계서 : 붙임
- 5) 성별영향평가분석 : 붙임
- 6) 관련법령 발췌문 : 붙임

## 임실군 조례 제 호

###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2조제5호를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산림작물”을 “산림작물”, “수산양식물”로, “제5호”를 “제5호, 제13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임업인”을 “임업인”, “어업인”으로, “임업을 “임업, 어업”으로 한다.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보상대상 및 범위)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임실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등의 피해 중 농업인 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있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등 중”을 “등이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산림작물”을 “산림작물, 수산양식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”를 “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보험가입)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있다.

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.

1.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
2.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
3.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다른 법률의 준용)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시행령,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유해야생동물”이라 함은 「야생동물·식물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.</p> <p>2. “농작물”, “산림작물”(이하 “농작물 등”이라 한다)이란 「농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4호, 제5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.</p> <p>3. “농업인”, “임업인”(이하 “농업인 등”이라 한다)이란 농업, 임업(이하 “농업 등”이라 한다)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보상대상 피해면적) 보상대상 피해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보상 제외대상) 피해 농업인 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-----.</p> <p>2. ----- “산림작물”, “수산양식물”(이하 ----- 제5호, 제13호 -----.</p> <p>3. ----- “임업인”, “어업인”(이하 ----- 임업, 어업(이하 -----.</p> <p>제3조(보상대상 및 범위)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임실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의한 농업 등의 피해 중 농업인 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보상 제외대상) ----- 등이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6조(피해액 산정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산림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</u></p> <p>제7조(피해보상액 산정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%까지 지급하되,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피해액 산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산림작물, 수산양식물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7조(피해보상액 산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(보험가입)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3. <u>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</u>  4. <u>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<u>제11조(다른 법률의 준용)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을 준용한다.</u></p>



##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

관리번호	2014A전북임실061		
정책명	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지원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
	부서명	임실군	
	담당자명	이혜윤	전화번호 063-640-2352
주요 분석평가 내용(임실군)			
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제5조 보상제외대상에서 총 피해면적을 165㎡ 미만으로 잡고 있으나 이는 피해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피해액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따라서 단순히 면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관계없이 재산피해액 하한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 피해면적을 넓힐 거나 피해액 하한선을 높일 수록 여성가구주에게는 불리할 수 있음. 따라서 단순면적이 아니라 면적과 피해액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함.</li> <li>■ 또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경작하는 경우 보상을 배제하고 있으나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생계형으로 농어업을 하는 경우 경작 금지 지역이지만 오래 전부터 생계형으로 경작해 온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. 이럴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함. 대부분 여성가구주의 경우 열악한 여건에서 소소하게 생계형으로 일구어 가다가 재해를 입을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.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.</li> <li>■ 제 9조 1항에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성별분리통계로 수혜자 및 금액, 분야 등을 기록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. 재해관련 피해와 보상에 관한 성별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분야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조례에 규정하여 의무화하는 것이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데 효과적인 것임. 아울러 별지서식 1호 피해보상 신청서에 성별구분 표기란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.</li> </ul>		
검토의견 반영 결과 (임실군)	<p>이번에 분석평가 의뢰한 임실군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어의 정의 신설 (안 제2조)  “농작물”, “산림작물”,을 “농작물”, “산림작물”, “수산양식물”으로  “농업인”, “임업인”,을 “농업인”, “임업인”, “어업인”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성별영향 분석과는 무관함.</li> <li>○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이 경작한 농지에 대해 예외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농지경작에 대한 양성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님</li> <li>○ 보험가입 신설 (안 제10조) - 성별영향과 관련없음</li> </ul>		

○ 별지 1호서식의 성별구분란의 필요성제기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나 필요시  
다음 개정시에 고려하겠음

2014년 11월 18일

**임실군 환경보호과장**

**분석평가책임관** 귀하

##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 요인

-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일부 지원

○ 관련조문

- 임실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3조

### 2. 비용 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피해면적 165㎡이상 , 총 피해보상액 10만원 이상

나. 추계 결과

- 2015년도 약 90농가 60,000천원

다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농촌진흥청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함

### 3. 재원조달 방안

- 2015년부터 본예산에 반영

### 4. 작성자

- 환경보호과장 김금순

## 관련(상위)법령 발췌문

### 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12조(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(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나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2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,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·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2.>

1.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
2.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
3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12조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
4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
5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6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7.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

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7.28.]